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 [공무원 지침서]

2024.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지침 · 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등 직원 교육용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안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 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지침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규정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그 절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type="checkbox"/> 예(☞안내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4년 6월 26일		
담당자 확인(부서장)		엄소영 박재현

이 지침서는 의료제품의 신속(우선)심사 대상품목의 지정 및 심사에 대한 업무절차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4년 6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5068

팩스번호 : 043-719-5060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지침서-0983-01	2020.9.28.	제정
2	-	2021.3.31.	개정
3	지침서-0983-02	2021.5.31.	개정
4	지침서-0983-03	2024.6.26.	개정

목 차

1. 목적(Purpose)	1
2. 배경(Background)	1
3. 관련 법령, 지침 등(References)	1
4. 방침(Policy)	2
5. 정의(Definitions)	4
6. 절차(Procedures)	8
7. 업무수행 흐름도(Flow chart)	16
8. 시행(Effectiveness)	22
[붙임 1] 신속(우선)심사 대상 및 심사담당 부서	23
[붙임 2] 의약품 관련 양식	28
[붙임 3] 의료기기 관련 양식	38

1. 목적(Purpose)

- ▶ 이 업무수행편람은 의료제품의 신속(우선)심사대상 중 신속심사과 소관 업무에 필요한 대상·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신속처리 대상품목의 심사는 본 업무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배경(Background)

- ▶ 신속심사 업무는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또는 치료, 기존 치료법이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도모하고자 수행되는 업무이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관련 법령, 지침 등(References)

3.1. 법령

○ 민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총리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식약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 의약품

- ▶ 「약사법」(법률)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 고시)
-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
-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

- ▶ 「의료기기법」(법률)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식약처 고시)

3.2. 문서

- ▶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신속심사과-4호, 2020.9.1.)
-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신속심사 방안(신속심사과-1171호, 2021.5.4.)

3.3. 부서

3.2.1. 신속(우선)심사 민원의 주관부서

- ▶ 신속심사과

4. 방침(Policy)

- ▶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는 신속(우선)심사 업무는 이 편람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적용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는 신속(우선)심사 대상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품목은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게 되며, 이외의 신속 심사 대상 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 심사부의 각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붙임 1]의 별도 절차를 적용한다.

○ 의약품

- ▶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해당 질환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는 개선을 보이거나, 기존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현저히 개선을 나타냄을 보여야 함
-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치명적인 대유행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 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 ▶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 의료기기

- ▶ 희소의료기기(지정된 품목에 한함)
- ▶ 혁신의료기기(지정된 품목에 한함)
-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규정」에 따른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중 '통합운영 동시신청' 민원
 - * 이미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받던 중 통합운영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신속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정의(Definitions)

5.1. 용어의 정의

- (신속(우선)심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 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함
- (희귀의약품)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 * (관련) 「약사법」 제2조제18호
-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이거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보건복지부 고시)
- (심각한 중증질환)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 또는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이환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환이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는 비가역적이 아니어도 이 정의에 해당된다. 질병 또는 상태가 중대한지 여부는 생존, 일상적 기능 수행, 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질환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 등과 같은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임상적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 (기준치료법)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이미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면서 신청하고자 하는 적응증에 대한 국내 표준 치료(standard of care)와 부합하는 치료
- (기존의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는 경우)

- 해당 질환에 기준치료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미있는 중대한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여 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상태에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 기존 치료법에 내약성이 없거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상태에 효과가 있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병용 불가능한 다른 주요 약물과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기존 치료법과 유효성이 유사하면서, (1)기존 치료법 사용 시 발생하는 중대한 독성이 없거나, (2)중대한 질환 치료의 영구중단을 초래하는 덜 중대하지만 흔한 독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3)유해한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더 낮은 경우
- 기존 치료법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유사하면서, 중대한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 (첨단바이오의약품)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말함
 - * (관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희소의료기기)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
 - * (관련)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제2호
- (혁신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
 - *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제4호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검토하여 의료기기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를 '통합운영'이라 하며, 통합운영 제도에 신청하여 통합운영 검토대상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말함
 - * (관련)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5.2. 접수담당자

- ▶ 신청인(신청 업체)이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및 품목허가 신청한 신속심사 건을 처리담당자에 지정해 주는 자로서 신속심사과장이 지정한 자이며, 처리담당자와 동일할 수 있다.

5.3. 처리담당자

- ▶ 접수담당자에 의해 배정된 신속심사 건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심사자료 중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하 안유), 기준 및 시험방법(이하 품질),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심사를 담당하는 자(심사담당자)와 동일할 수 있으며 신속심사과 업무 분장 사항에 따른다.

5.4. 심사담당자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심사자료 중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하 안유), 기준 및 시험방법(이하 품질),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등 분야별 심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신속심사과 업무분장에 따른다. 전담심사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각 분야 심사담당자(임상통계 담당자 포함)를 모두 포함한다.

5.5. 전담심사팀

- ▶ 의약품 허가 심사자료의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허가심사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접수 시 전담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 품목에 따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의약품),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 정책과(바이오허가TF)(생물의약품),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허가과(의료기기)의 담당자, 신속심사과의 연구관(사무관), 주무관(심사관) 및 관련 부서의 연구관(사무관), 주무관(심사관) 등으로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5.6.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전문가협의체

- ▶ 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 지정,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심사업무 수행 시 자문하기 위하여 최신의 과학적 지식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일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

5.7. 업무대행자

- ▶ 업무분장 사항 중 접수담당자, 처리담당자 및 심사담당자 부재 시 각각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이다.

5.8. 신청인

- ▶ 개발 중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업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신청 중인 자를 말한다.

6. 절차(Procedures)

6.1 의약품

6.1.1 신속(우선)심사대상 지정

-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는 신속(우선)심사 대상품목 지정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지정한다.

- 신청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속심사대상 지정을 신청[붙임 2-1]한다.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를 포함한다.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붙임 2-3]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결과 통지서’와 [붙임 2-4]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를 발급한다.

<신속심사과 심사 대상 지정 의료제품>

- ①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치명적인 대유행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 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 ③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 다만 치명적인 대유행감염병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심사대상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동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속심사 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핵심 임상시험(예: 3상)의 주요 결과(Topline result)^{*}가 얻어진 경우에는 허가 신청 이전에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 핵심 임상시험 결과의 유효성·안전성 주요 결과를 개요 수준으로 요약·정리한 자료

6.1.1.1 접수 및 배정

- 접수부서(신속심사과) 접수담당자는 처리담당자에게 지정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배정한다.

6.1.1.2 지정신청 심사 및 결과 통보

- 처리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청 업체는 식약처의 1차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자료가 요구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처리기간은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다.
- 처리담당자는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그 최종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신속(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이면서 희귀의약품으로 동시에 지정 신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신청인(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및 의약품정책과(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게 회신한다.
- 필요시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4. 방침의 신속심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 지정 시, 메모보고 등을 통해 관련부서(허가부서, 정책부서, 의약품심사부·바이오생약심사부의 해당심사부서)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장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1.2 신속(우선)심사

6.1.2.1 접수 및 배정

- 신청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 신속심사를 신청한다.

- 접수부서(의약품허가총괄과 또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신청한 의약품 민원(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 등 신속심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을 접수하여 신속심사과로 협의 의뢰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접수시 전담심사팀을 구성한다. 전담심사팀은 허가부서(의약품허가총괄과 또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의 담당자, 신속심사과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 의약품심사부 또는 바이오생약심사부 해당부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 사전상담과의 임상통계심사자, 의약품안전국 또는 바이오생약국의 위해성관리계획(RMP) 검토자,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 평가자, 특허관계 확인 검토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약 또는 신물질 신약의 경우에도 구성할 수 있다.
- 신속심사과의 접수담당자는 허가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처리담당자에게 배정한다.

6.1.3.2 신속(우선)심사 및 결과 통보

- 처리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전담심사팀이 구성된 경우 팀원에게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공람하며, 전담심사팀원은 관련 심사 규정, 민원인 안내서 및 공무원 지침서에 따라 신속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한다. 처리 담당자가 각 분야별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의약품허가총괄과 또는 바이오 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에 회신한다. 이 경우 다른 의약품의 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해당 제품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 회신 내용이 보완인 경우 처리담당자는 각 심사담당자의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의약품허가총괄과 또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에게 심사결과를 회신하고, 의약품허가총괄과 또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한다. 신청인이 보완자료를 접수하면 처리 담당자는 신속하게 보완자료를 심사담당자에게 공람하고, 보완자료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접수부서로 회신한다. 재보완(2차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동일하게 진행한다.
-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심사자문단,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 협의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6.2 의료기기

6.2.1. 신속심사 대상

6.2.1.1 희소의료기기 (지정된 것에 한함)

- 희소의료기기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 희소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책과에서 지정한다.
-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지 않는 희소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의료기기심사부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2.1.2 혁신의료기기 (지정된 것에 한함)

- 혁신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기는 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 지정한다.

-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지 않는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의료기기심사부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2.1.3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대상 의료기기 (별도 지정 신청 불필요)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대상 의료기기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대상 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대상 의료기기는 별도의 지정 절차가 없으며, 신속심사과의 신속심사 대상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중 ‘통합운영 동시신청’ 민원에 한한다.
-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지 않는 통합운영대상 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통합운영 전환신청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의료기기심사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2.2. 신속심사

6.2.2.1. 접수 및 배정

- 신청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료기기 신속심사를 신청한다.
- 접수부서(의료기기허가과)는 신속심사로 신청한 의료기기 민원(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및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동시신청)을 접수하여 신속심사과로 협의 의뢰한다.
- 신속심사과의 접수담당자는 허가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처리담당자에게 배정한다.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동시신청’ 한 민원 중 통합운영 대상 여부 판단 후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과에서

신속심사를 수행하고, 통합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기 심사부 담당부서로 이관한다.

-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운영으로 전환하여 신청한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신청’ 민원은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기심사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6.2.2.2. 신속심사 및 결과 통보

- 처리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처리담당자 및 심사담당자는 심사규정 및 민원인 안내서 및 공무원 지침서에 따라 신속심사 신청 사항을 검토한다. 처리담당자가 각 분야별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부서로 회신한다. 이 경우 다른 의료제품의 허가신청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해당제품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도록 한다.
 - 회신 내용이 보완인 경우 처리담당자는 각 심사담당자의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의료기기허가과에 심사결과를 회신하고, 의료기기허가과는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한다. 신청인이 보완자료를 접수하면 처리 담당자는 신속하게 보완자료를 심사담당자에게 공람하고, 보완자료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접수부서로 회신한다. 재보완(2차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동일하게 진행한다.
 - 필요시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 외부전문가 참여프로그램 및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등 외부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최우선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전담심사자 지정 및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상담·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요청받은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른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위해 전담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규격, 실측치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
2.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
3. 보완사항에 대한 상담 및 검토
4. 신청 제품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회 지원

6.3.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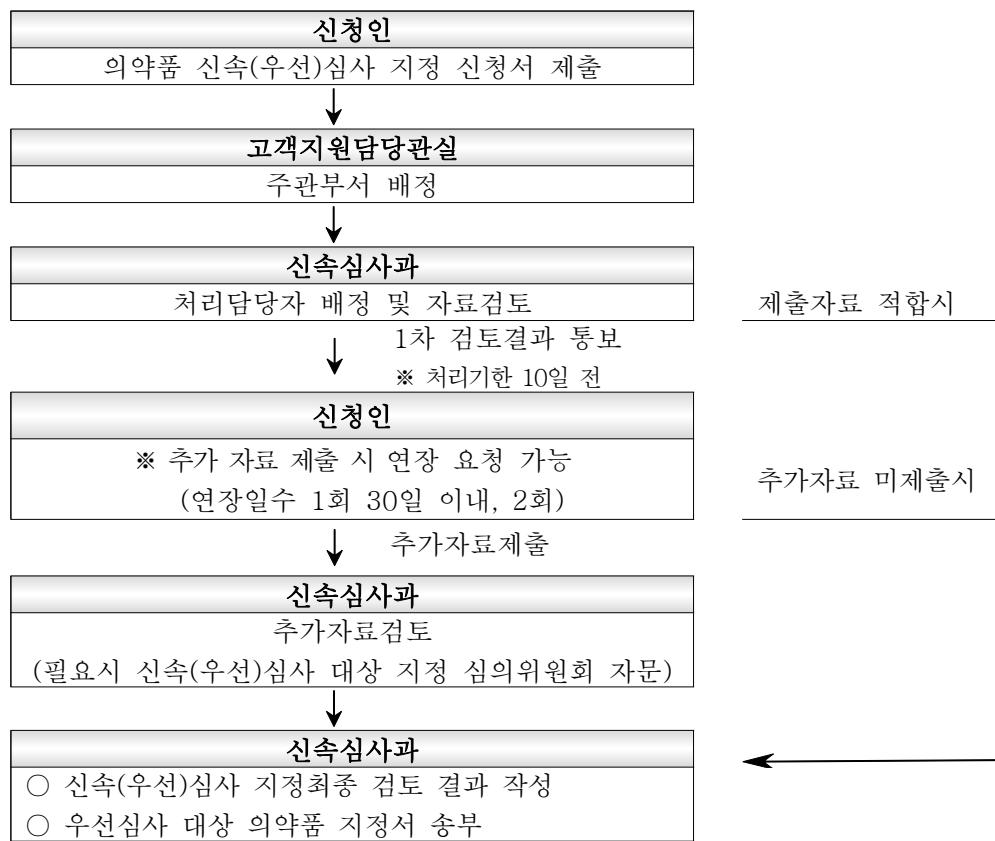
6.3.1.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취소

-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후속임상시험 등에서 신속심사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때 지정통지 받은 자는 이러한 사실을 품목 허가 신청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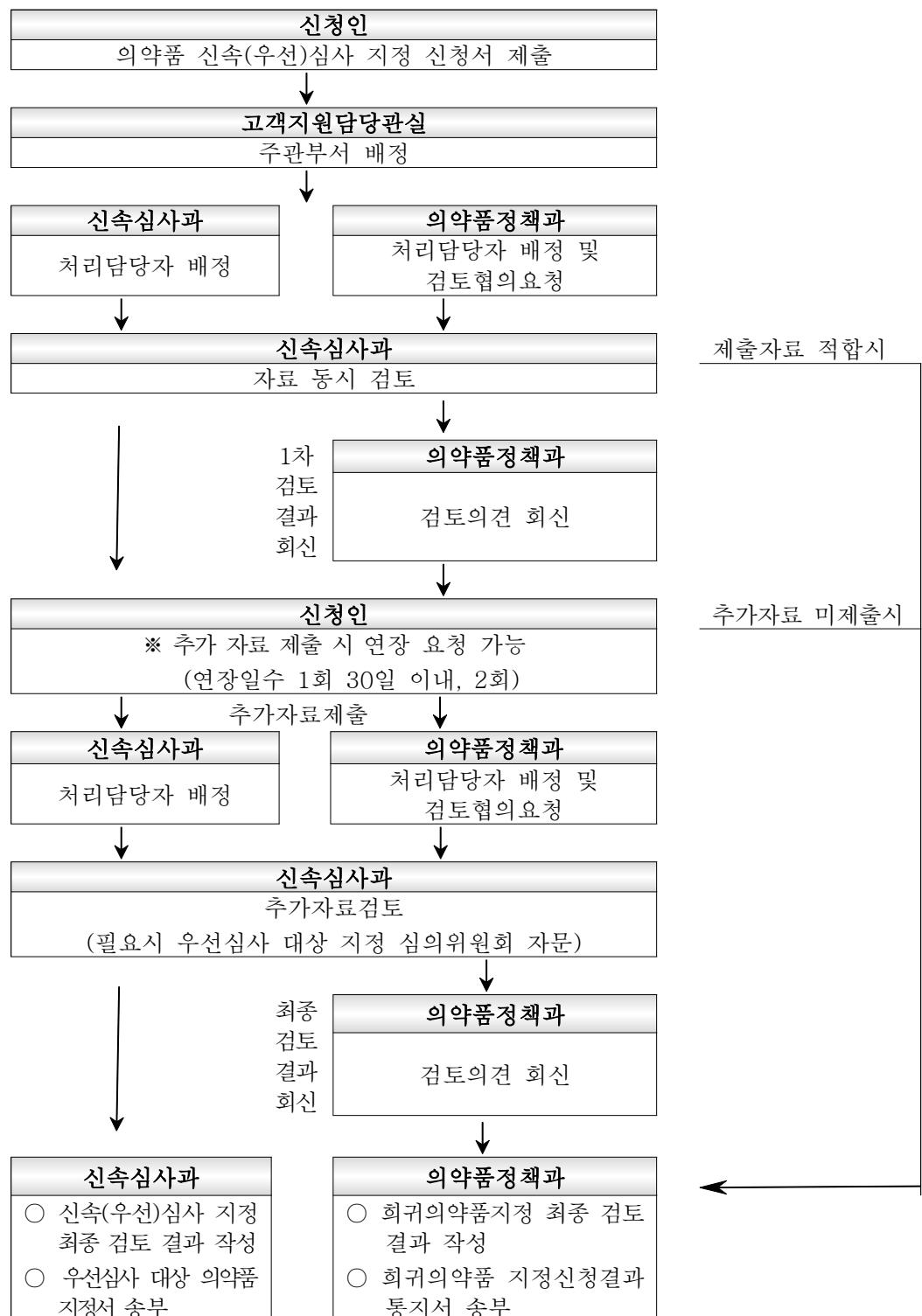
7. 업무수행 흐름도(Flow chart)

7.1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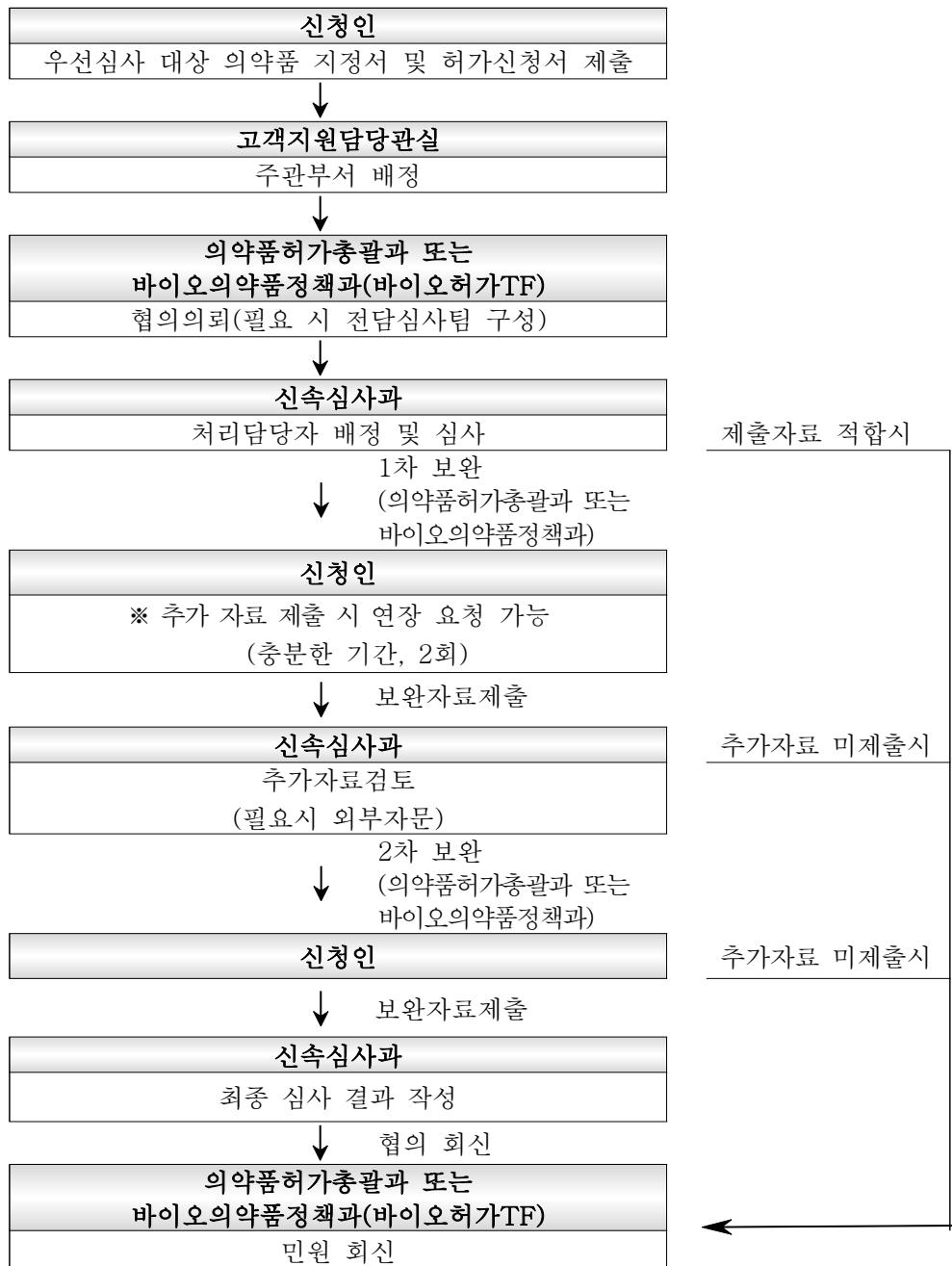
7.1.1 단독 신청



7.1.2 신속(우선) 심사 및 희귀의약품 지정 동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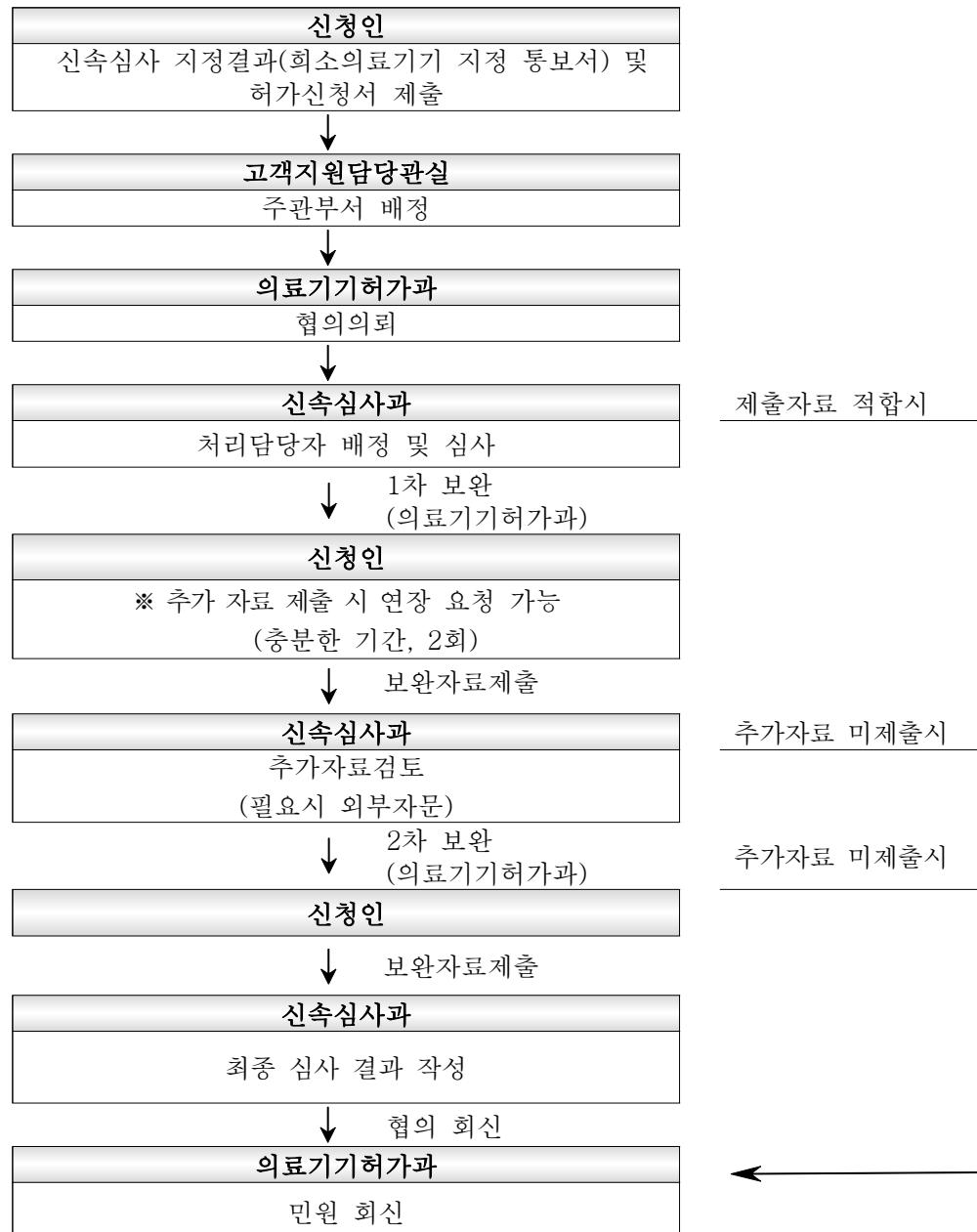


7.2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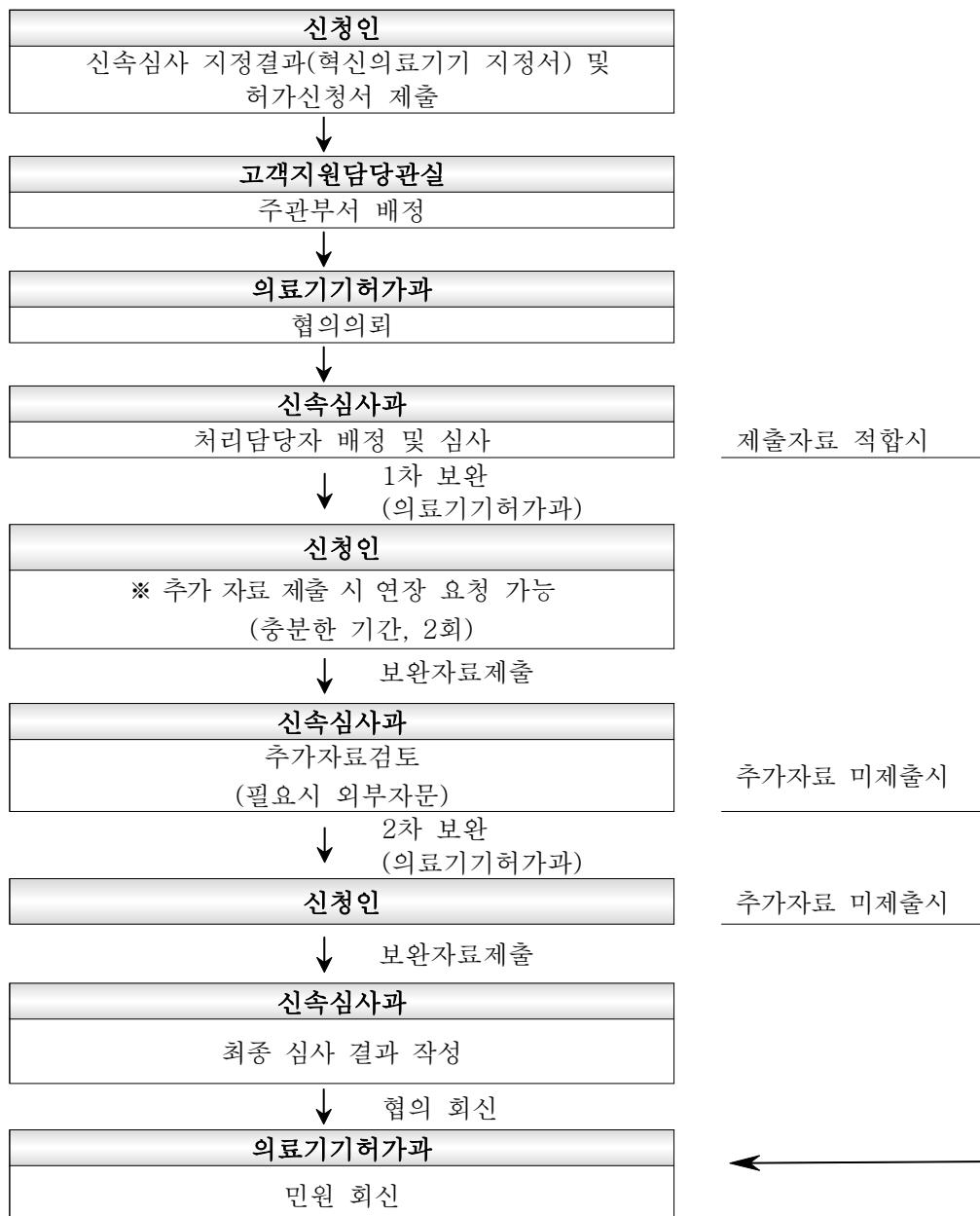


7.3 의료기기 신속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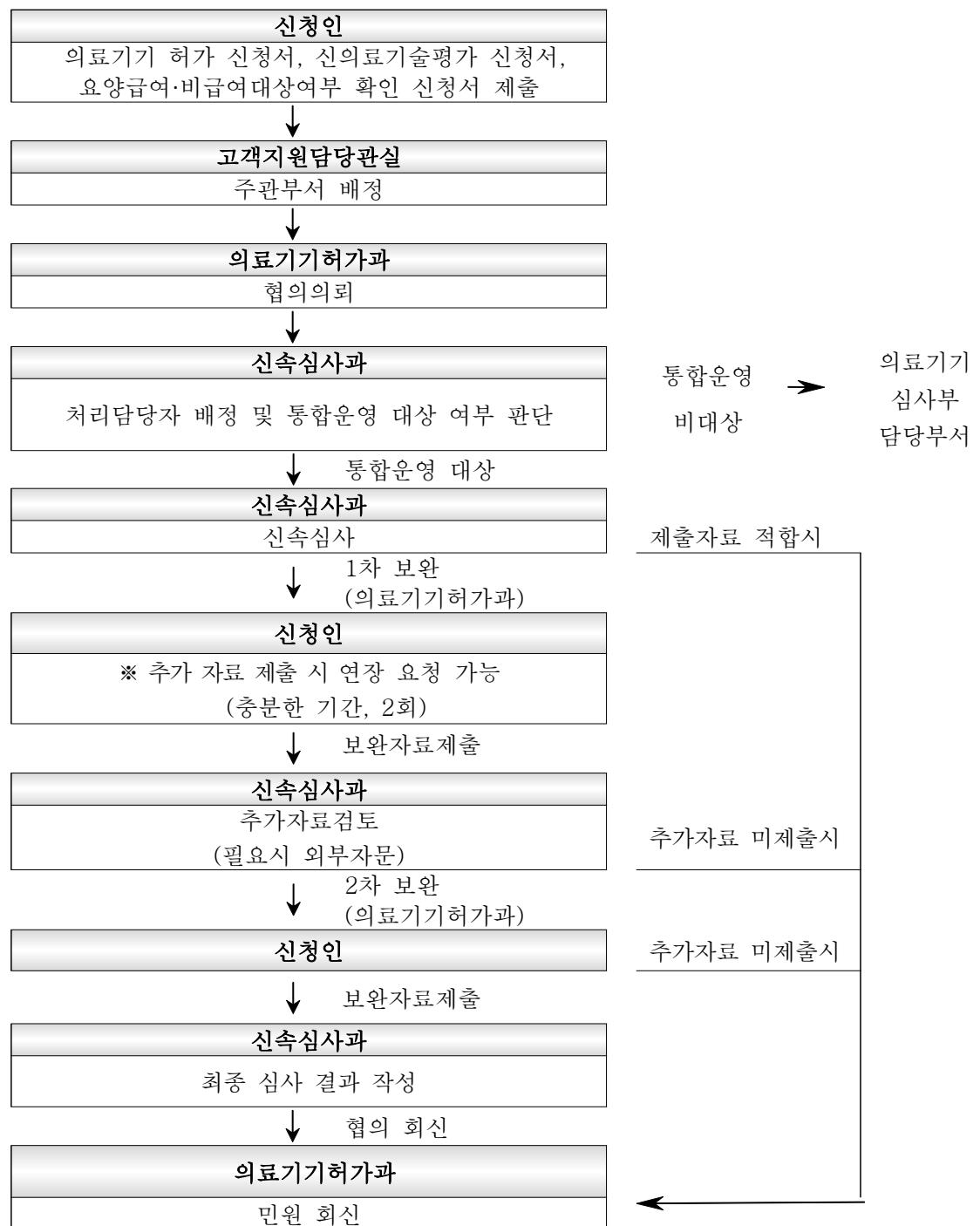
7.3.1 희소의료기기



7.3.2 혁신의료기기



7.3.3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8. 시행(Effectiveness)

- ▶ 이 편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속(우선)심사 대상 및 심사담당부서

구분	분류	종 류	심사담당부서	관련 규정 및 지침
신속 심사 대상	의약품, 바이오 (첨단바이오 의약품 중 신속처리대상 제외)	<p>① 심각한 증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②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치명적인 대유행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 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p> <p>③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p>	신속심사과	<p>「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20.9.1,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위협 또는 중대질환 치료목적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 대유행 등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목적 희귀질환치료제 		
	그 외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 해당하는 품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41조 해당하는 품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3조 해당하는 품목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소관 부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희소 의료기기	④ 희소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신속심사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20.9.1, 지침)
	디지털헬스기기	디지털헬스규제 지원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과	
혁신 의료기기	⑤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신속심사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20.9.1, 지침)
	디지털헬스기기	디지털헬스규제 지원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과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⑥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신속심사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신속심사 방안」('21.5.4, 지침)
	디지털헬스기기	디지털헬스규제 지원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과	

※ (참고) 부서별 신속심사 수행 범위

구분	관련 규정	신속심사과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58조제1항·제4항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43조제1항·제4항 <신속심사 >		
	1.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2.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 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1과 2를 동시에 만족 하는 경우	○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의약품 (한약 (생약) 제제 및 한약재 포함)	3. 기타 항암제, 희귀의약품, DNA칩 등 환자치료 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①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기존과 다른 신 개념의약품 등에 함) ②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중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치료법보다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③ 1번 중 기존치료법 보다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기타 항암제, DNA칩 등)
	4. 신약 및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혁신형 제약기업 외 신약 및 개량신약
	5.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	-	○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6.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	○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7.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 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약품	-	○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고시)」(식약처고시) 제41조		
	<신속심사>		
생물 학적 제제 등	1.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O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2.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 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또는 3번 중 기준과 다른 신개념의약품	O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3.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중 기준 치료법이 없거나 기준 치료법보다 개선을 보인 경우에 한함	O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4. 희귀의약품		그 밖의 희귀의약품
	5.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준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	1과 5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또는 3과 5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6.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백신 중 제조업자·위탁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자신이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모형으로 하고 제형, 제조방법 및 제조원이 동일한 백신		O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7.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	O (신속심사과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첨단 바이 오의 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O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O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 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O

의료 기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속심사>		
	첨단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 산업 발전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1. 희소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2.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기 (기타 첨단의료기기 등)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중 '통합운영 동시신청'한 민원 (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1.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2.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운영으로 전환한 민원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		
	<우선심사>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외)	혁신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신속심사>		
체외 진단 의료 기기	1.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산업발전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	○
	2. 이미 허가·인증·신고한 체외진단의료 기기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식약처장이 지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	○

[붙임 2] 의약품 관련 양식

[붙임 2-1] 신속(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신청서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우편번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속심사 대상	제품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 코드명 또는 주성분명 등 기재)		
	[]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제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 희귀질환 치료제		
제품정보	구성성분	필요시 [별첨] 제출	
	작용 기전	필요시 [별첨] 제출	
	제조 방법	필요시 [별첨] 제출	
	예상 효능·효과	필요시 [별첨] 제출 (주요내용에 대한 임상시험결과 등 포함)	
주요내용	목표적응증	필요시 [별첨] 제출	
	적용 대상 질환의 중대성	필요시 [별첨] 제출	
	기존 치료법	목표 적응증에 대한 기존 치료법 여부 []있음, []없음	

위와 같이 의료제품 신속심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해당 품목의 제품정보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

[붙임 2-2] 지정 검토결과 회신 양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 , 대표 : 귀하(,)
(경유)

제목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결과 알림[,]

귀 사가 .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접수번호 :)'의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약사법」 제35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속(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분(일반명)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사유	검토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 기존치료법 없음	지정

- 붙임 1.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결과 통지서.
2.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3]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결과 통지서

의약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결과 통지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우편번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제품명	주성분
-----	-----

신속심사 대상 신청사항	<input type="checkbox"/>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input type="checkbox"/>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제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input type="checkbox"/> 희귀질환 치료제

주요내용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붙임 2-4]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

제 호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서

1. 업체명:
2. 소재지:
3. 제품 명칭:
4. 효능 · 효과:
5.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약사법」 제35조의4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직인**

[붙임 2-5] 자료 보완 요청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 , 대표 : 귀하(,)
(경유)

제목 자료 보완 요청 [,]

1. 귀 사가 .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접수번호 :)」의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약사법」 제35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2. 일부의 자료가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요청사항.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6] 자료 보완 제출기간 연장 승인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 , 대표 : 귀하(,) (경유)			
제목 추가 자료 제출기간 연장 승인[,]			
<p>1. 관련 : 혁신제품심사팀-○('24.00.00)</p> <p>2. 귀 사가 .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접수번호 :)」의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건과 관련한 보완요구(' . .) 에 대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보완자료 제출기간 연장요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승인하니 해당 보완자료를 20○○.○.○.까지 우리 처(민원시스템 웹사이트 (nedrug.mfds.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hr/>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7] 민원 신청 자진취하 수리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 , 대표 :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신청 자진취하 수리 알림[,]

귀 사가 . 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접수번호 :)' 의 의료제품 신속(우선)심사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귀 사의 요청에 따라 동 건 자진취하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8]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관련 검토결과 회신 공문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수신 의약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관련 검토 결과 회신[-]

- 관련: 의약품정책과-○('24.00.00)
- 위와 관련하여 귀 과에서 검토의뢰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의 희귀의약 품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의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임과 같이 회 신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ni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9] 신속심사 검토결과 회신 양식(보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p>수신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경유)</p> <p>제목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신청 관련 심사결과 회신[-]</p>			
<p>1. 관련: 의약품허가총괄과-○('24.00.00)</p> <p>2. 위와 관련하여 귀 과에서 검토의뢰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의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하오니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검토의견. 끝.</p>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hr/>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ni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2-10] 신속심사 검토결과 회신 양식(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h3>		
<p>수신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경유)</p> <p>제목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신청 관련 심사결과 회신[-]</p>			
<p>1. 관련: 의약품허가총괄과-○('24.00.00)</p> <p>2. 위와 관련하여 귀 과에서 검토의뢰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의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합함을 회신합니다. 끝.</p>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h3>			
<hr/>			
시행	()	접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nifds.go.kr	전화 043-719-0000 전송 043-719-0000	/ 00000@korea.kr / 비공개 (7)

[붙임 3] 의료기기 관련 양식

[붙임 3-1] 검토결과 보완 요청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수신자 의료기기허가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뢰 회신(보완) [회사명]		
1. 관련		
가.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 (접수일자)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신청		
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2. 귀 부서에서 검토 의뢰한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을 검토한 결과, 불임과 같은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불임 제 접수번호호 심사결과 1부.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hr/>		
시행	()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114호 혁신제품심사팀	/ http://nifds.go.kr
전화 043-719-5000	전송 043-719-5000 / 00000@korea.kr	/ 비공개(5)

[붙임 3-2] 검토결과 부적합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수신자 의료기기허가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뢰 회신(부적합) [회사명]

1. 관련

- 가.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접수일자**)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신청
- 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 다. 검토의뢰 회신(보완)[**공문번호(시행일자)**]
- 라.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 마. 검토의뢰 회신(재보완)[**공문번호(시행일자)**]
- 바.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2. 귀 부서에서 검토 의뢰한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를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은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 **접수번호호** 심사결과 1부.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시행

()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114호 혁신제품심사팀 / <http://nifds.go.kr>

전화 043-719-5000

전송 043-719-5000

/ 00000@korea.kr

/ 비공개(5)

[붙임 3-3] 검토결과 재보완 요청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수신자 의료기기허가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뢰 회신(재보완)[**회사명**]

1. 관련

- 가.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접수일자**)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신청
- 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 다. 검토의뢰 회신(보완)[**공문번호(시행일자)**]
- 라.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2. 귀 부서에서 검토 의뢰한 (접수번호:제 **접수번호호**)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은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 **접수번호호** 심사결과 1부.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시행

()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114호 혁신제품심사팀 / <http://nifds.go.kr>

전화 043-719-5000

전송 043-719-5000

/ 00000@korea.kr

/ 비공개(5)

[붙임 3-4] 검토결과 적합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수신자 의료기기허가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뢰 회신(적합) [회사명]

1. 관련

- 가. 접수번호(제접수번호호(접수일자)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신청
- 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 다. 검토의뢰 회신(보완)[공문번호(시행일자)]
- 라.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 마. 검토의뢰 회신(재보완)[공문번호(시행일자)]
- 바.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 검토의뢰[공문번호(시행일자)]

2. 귀 부서에서 검토 의뢰한 (접수번호:제접수번호호)의 민원사무명 - 회사명 · 품목명(제품명)를 검토한 결과,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시행

()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A동 114호 혁신제품심사팀

전화 043-719-5000

전송 043-719-5000

/ 00000@korea.kr

/ 비공개(5)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

발 행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발 행일 2024년 6월 26일

발 행인 박윤주

편집위원장 박재현

편집위원 엄소영, 강세구, 정주연, 김지현, 김용국, 윤나영, 김지예, 정경아,
허덕림

문의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전화 : 043-719-5068
팩스 : 043-719-5060

“내가 지킨 청렴실천 모아지면 청렴사회”